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 제안이유

-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의 신설에 따라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를 2,522명에서 2,529명으로 조정 (증원 7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62명 (변동없음)
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67명 (증원 7명)
 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6명 (변동없음)

 의안전문 :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522명”을 “2,529명”으로 하고,
동조제2호중 “960명”을 “967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522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<u>960명</u></p> <p>3. 내지 4. (생략)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2,529명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: <u>967명</u></p> <p>3. 내지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- ⑤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제21조 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1. 집행기관의 정원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외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- ④ (생략)

□ 소방직 표준정원

(행정자치부고시제2003-17호)

960 명	967 명	△ 7	

*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 조정 가능